

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

❖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다양한 정보와 문화콘텐츠를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(2014.12.31.제정)

□ 시행년도 : 2015년도

□ 추진계획

- 사업기간 : 2026. 1. 1. ~ 12. 31.
-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
 - ※ ‘중증장애인’ : 「장애인연금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 - ※ ‘저소득’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(생계급여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수급자 등),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차상위계층(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이내의 가구)
 - ※ 대상자격 확인방법 : 행복e음 조사·결정 → 결정 → 통합조사 및 결정 →보장정보
- 지원제외 : 보장시설수급자
- 지원내용 : 협약방송사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(Set Top Box) 사용료에 대하여 월 7,700원 지원
 - 디지털방송 최저요금 상품 (1년약정기준, VAT포함) 22,000원의 35%
 - 이용요금 및 STB사용료 추가액 및 시설설치비는 방송사 부담
- 협약 방송사 : (주)KCTV제주방송
 - 상 품 명 : HD 120
 - 상품요금 및 부담비율

상품명	채널수	요금 (VAT포함, 1년약정)			비 고
		계	도 지원액	KCTV부담액	
HD 120	87개	22,000원 (100%)	7,700원 (35%)	14,300원 (65%)	※ 장애인가구 본인부담금 없음

※ 약정기간 중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위약금은 면제

○ 2026년도 예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계	제주시	서귀포시	비고
42,220	27,720	14,500	

□ 지원절차

-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,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는 [서식12]에 의거 신청서를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
- 읍면·동장은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10일 이내 행정시로 송부
- 행정시에서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협약체결 방송사 및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
- 오지 등의 사유로 디지털 유료방송 전송망이 구축이 불가하거나 과도한 설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시와 KCTV가 협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□ 급여지원

- 급여개시일 :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
- 지원방법 : 행정시에서는 매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방송사 해당계좌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금액을 일괄 지급
- 감액지원 : 지원대상이 이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,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 지원할 수 있음.

[예] 방송사, 타 기관 등으로부터 5,500원상당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,
본 사업으로 차액 2,200원만 지원함 (중복지원 금지)

□ 자격관리

-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관리 [서식13]
-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[서식14]
- 행정시에서는 월 1회 이상 지원대상자 명단 통보
- 방송사에서는 계약해지자 발생시 행정시에 통보
- 읍면동에서는 매월 지원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확인하여 행정시로 통보하고 행정시에서는 KCTV에 확인
- 급여중지 : 지원대상 자격상실일이 속한 해당 월까지 지원한다.
 - 지원대상이 도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
 -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
 - 장애정도의 변동,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탈락된 경우 등 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
-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

□ 업무 흐름도

